

# 예산총칙

201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82,645,691	11,479,371
일반회계	363,888,096	10,916,643
특별회계	18,757,595	562,728
기타특별회계	18,757,595	562,728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905,733	87,17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7,229	19,717
주차장 특별회계	8,139,338	244,18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637,400	19,122
기반시설 특별회계	9,465	284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892,000	26,760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1,787,052	53,612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3,729,378	111,88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100,69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2016년 제3회 추경 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시보조금(구비부담분 포함),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의결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한다.

## ※ 예산서 자원표기

[국] 국고보조금 [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 기 금  
 [특] 특별교부세 [별] 특별조정교부금 [시] 시비보조금 [구] 자체자원